

제324회 임시회
2013. 10. 17.(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0. 17.(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3년 9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0월 15일

- 제324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3조)
 - 3급 600천원, 4급 500천원, 5급이하 400천원(안 별표2)
 - ※ 충주지청 근무자의 경우 200천원 가산 지급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규정 신설(안 제 4조)
 - 지급금액: 월 300천원(안 별표3)
 -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82호)에 따라 월 300천원 정액지급 되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 하도록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4월 26일 개청하여 정원은 총 63명(1청장, 2본부, 5부)으로 승인되었으나, 업무량과 도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도 본청 이관 인력 21명을 포함한 47명으로 출범하였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출범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본 조례개정안을 지연 제출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액 규모산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8
----------	-----

제출연월일 : 2013년 9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신설 (안 제3조)
 - 3급 600천원, 4급 500천원, 5급이하 400천원 (안 별표 2)
 - ※ 충주지청 근무자의 경우 200천원 가산 지급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규정 신설 (안 제4조)
 - 지급금액 : 월 300천원 (안 별표 3)
 -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582 호)에 따라 월 300천원 정액지급 되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 하도록 개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로,
“별표와 같이 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제
4조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제2조 관련)

구분	시·군별	지역 및 등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벽지 지역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한수면 송계리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별표 2]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4급	5급 이하
월 지급액	600,000원	500,000원	400,000원

※ 충주지청 근무자의 경우 월 200,000원 가산 지급

[별표 3]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충청북도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300,000원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582호)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 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표 9] <개정 2013.6.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구분	수당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 행정 분야	9.경제자 유구역청 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1.9. , 시행 2013.7.1. >

<p>【별표 14】 직급보조비의 지급구분표 (제18조의6관련)</p>	<p>비고 3. <u>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u></p>
---	--

인건비용 추계서

○ 관련조문(안 제3조)

-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4급	5급 이하
월 지급액	600,000원	500,000원	400,000원

※ 충주지청 근무자의 경우 월 200,000원 가산 지급

○ 비용 추계결과

- 추가소요비용 : 256,800천원
- 세부내역 (정원기준)

<본 청>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소요액 (A)×(B)	인원 (A)	1인당 연간 지급액(B)
계	166,800	34	
3급	-	-	-
4급	18,000	3	6,000
5급 이하	148,800	31	4,800

<충주지청>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소요액 (A)×(B)	인원 (A)	1인당 연간 지급액(B)
계	90,000	12	
3급	9,600	1	9,600
4급	8,400	1	8,400
5급 이하	72,000	10	7,200

※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개정 사항은 기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건비 추가 소요 없음